

瑞山市環境基本條例(案) 檢 討 報 告

1. 發 議 者 : 박영웅 의원의 10인

2. 發議年月日 : 1998. 1. 7

3. 提 案 理 由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고, 시민도 깨끗한 공기·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함에 따라,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(법제상의 조치등)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분야에 충실을 기하고,
-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임.

4. 主 要 骨 子

-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, 환경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환경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함(안제5조, 안제6조).

-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함(안제8조).
-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,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적 자문기구로 환경기술지원단을 설치 운영함(안제11조, 안제12조).
- 지역내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함(안제17조).
-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책무와 행동 원칙을 규정함(안제19조, 안제21조).
-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, 교육기관, 전문가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함(안제22조, 안제23조, 안제24조).
-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하고 시민·단체 등의 환경보전운동에 협력토록 함(안제26조, 안제28조).

5. 關 係 法 規

- 근거규정 :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, 지방자치법 제15조
- 관련검토법령 : 환경정책기본법령, 환경영향평가법령

6. 參 考 事 項

- 환경기본조례 제정된곳 : 서울특별시, 대전직할시, 순천시

7. 檢 討 意 見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을 이어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으로써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러나 조례안 제6조에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국가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매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어, 국가기본계획과의 연계성과 재정여건등 실효성을 고려하여 시환경기본계획을 국가계획과 같이 10년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
- 조례안 제6조제7항의 내용은 제4항의 내용과 유사하여 삭제하고, 제7항의 단서규정을 제4항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조례안 제8조제2항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- 조례안 11조(환경위원회 설치등) 환경위원회 명칭을 부기함에 있어 정식명칭을 규정한다음 약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위원회(이하 “환경위원회”로 한다) ⇒ 환경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로 한다)

- 또한, 조례안 부칙에 기 수립된 서산시환경기본계획을 이 조례에 의해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어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과 예산낭비 방지등으로 주민신뢰도를 높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.